

#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26호
- 다. 제출일자 : 2018. 8. 16
- 라. 회부일자 : 2018. 8. 21

### 2. 제 안 사 유

-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,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(監事) 선임 규정 폐지  
(안 제4조)
- 나. 환경교육 중요성 증가에 따라 ‘환경교육분과위원회’ 신설 운영(안 제4조,

제8조)

다.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 
(안 제8조제2항)

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

#### 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협의완료
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
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없음

(7)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 사항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18. 5. 24 ~ 6. 14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붙임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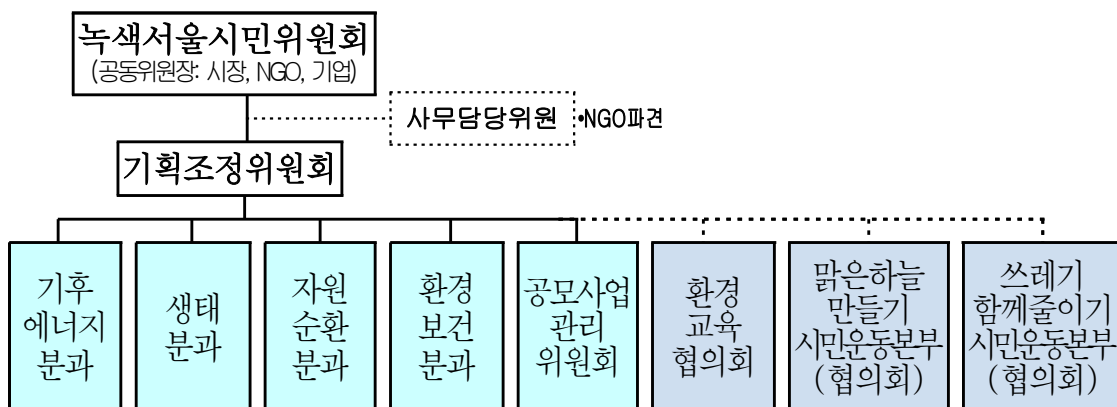
- 본 조례안은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,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현황

- 현행 녹색서울시민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,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치·운영되고 있음.

위원회 구성은 3명의 공동위원장, 기획조정위원회, 4개 분과위원회, 공모사업관리위원회, 환경교육협의회 등 3개 협의회로 되어 있으며, 위원 수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되어 있음.



<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 현황>

2)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및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관련(안 제4조, 제8조)

- 현행 조례 제2조제6호는 위원회 기능 중 ‘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·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, 교재개발·지원 등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, 환경교육은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.

그러나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·에너지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,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8조2(기타 협의회의 설치)를 준용하여 ‘환경교육협의회’를 구성·운영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환경교육분과위원회는 당초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구성 되어 있었지만(11.3.17~13.7.31), 2013년 동 조례 개정으로 환경교육 분과위원회가 삭제되고 현행과 같은 4개 분과위원회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.

따라서 위원회의 업무와 주요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 ‘환경교육협의회’를 대체하여 별도의 ‘환경교육분과위원회’를 조례에 규정·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 되며, 이에 따른 위원 수 증가는 없음.

<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>

현 행	개 정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기후·에너지분과위원회</li> <li>□ 생태분과위원회</li> <li>□ 자원순환분과위원회</li> <li>□ 환경보건분과위원회</li> <li>□ 환경교육분과협의회 (폐지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기후·에너지분과위원회</li> <li>□ 생태분과위원회</li> <li>□ 자원순환분과위원회</li> <li>□ 환경보건분과위원회</li> <li>□ 환경교육분과위원회 (신설)</li> </ul>	<p>환경교육협의회를 분과위원회 체계로 대체하고 조례에 규정</p>

- 분과위원회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<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주요 예>

분과위원회	주요 기능 조정 사항
기후·에너지	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추가
생태	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,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추가
자원순환	자원순환문화 확산,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추가
환경보건	대기질 개선 관련 자문 및 시민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삭제하고(기후·에너지분과위로 기능 조정), 석면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추가

3) 감사(監事) 선임 규정 폐지 관련 (안 제4조)

- 현행 조례 제4조는 2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 이후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실제 위원회 내 감사의 역할은 연말 정기회에서 위원회 활동사항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을 단순 보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음.
- 실제 동 위원회가 주요 기능인 서울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 외에 일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, 실제 사업추진, 예산집행 및 정산은 기후환경본부 내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위원은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의결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.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다른 위원회 (장애인복지위원회, 시사편찬위원회 등) 관련 조례에서도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- 따라서 현재 동 위원회 내 감사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유사 위원회의

경우도 감사를 선임한 사례가 없으며, 일반적인 예산집행과 위원회 활동 평가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, 안 제4조와 같이 감사 선임 규정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.

#### 4) 기타 조문 정비 관련
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난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, 내용 중 다른 조례의 제명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#### <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례 정비 주요 예>

현 행	개 정
자	사람
긴급을 요하는	긴급한
~ 의 규정에 의한	~ 에 따른
~ 의 규정에 의거	~ 에 따라
~ 의 규정에 의하여	~ 에 따라
기타	그 밖에
~ 내지 ~	~ 부터 ~ 까지
~ 아니한다	~ 아니하다
~ 범위 안에서	~ 범위에서
「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」	「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」